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용역 보고서

#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9

 신화회계법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제 출 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 9.

신화회계법인  
책임연구원 임 중 희  
연구원: 장 태 일  
김 진 봉  
최 영 복

# 요 약 문

## 1.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

### ○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디자인

디자인 개발계약은 발주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물품을 디자이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 또는 유사 종류의 물품의 형상 등과 구별되는 미적 요소를 갖춘 형상 등을 창작하는 과정

### ○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개발결과물 미확정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개발결과물이 시각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개발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며,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확정

### ○ 지식재산 창출과정

디자인 개발용역은 디자이너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로서 계약의 이행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을 창출

### ○ 최종결과물의 권리침해 용이성

디자인은 외관 형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상·모양·색상의 일부 조형적 변경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창출이 가능

전산화된 작업환경(CAD/CAM의 이용)은 디자이너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단시간 내에 복제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형시킬 수 있음

## 2. 디자인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인 개발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의 전형계약인 도급계약과 개발된 디자인을 발주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시적으로 창작자가 취득한(할) 지식재산권의 이전(사용)계약이 혼합된 혼합계약

디자인 개발계약의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도급계약의 법률관계와 지식재산권 이전

(사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법률관계를 적용하여야 함

## □ 도급계약

### ○ 디자이너의 권리와 의무

디자이너는 계약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완성된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하자 없이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대가로 보수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음

### ○ 발주자의 권리와 의무

발주자는 계약 이행의 목적물인 디자인을 인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 등이 있음

## □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 ○ 창작자로서의 디자이너의 권리와 의무

창작자로서 디자이너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등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 응용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양도되지 않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창작과 이용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발주자의 디자인의 독점적 실시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

### ○ 발주자의 권리와 의무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발주자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디자이너를 창작자로 표기할 의무, 인수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 등이 있음

## 3. 주얼리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황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및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얼리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 주얼리 디자이너

### ○ 경영규모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전체 응답자의 61.5%가 연간 매출 1억원 이하, 72.1%가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이며, 디자이너 본인을 포함한 근무자수는 5인 이하 77.9%, 10인 이하 88.5%로 매출액과 종사자수 측면의 경영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

#### ○ 디자인 개발과 주얼리 매출 겸업

디자인 매출이 전체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 45%, 50% 이상 14%, 없음이 29%이고, 주고객 중 일반소비자 비율 45.8%, 판매장 보유 42.3%, 주얼리 브랜드 등록률 58.7%로 주얼리 디자이너는 자신의 브랜드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장을 직접 경영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

#### □ 인테리어 디자이너

##### ○ 경영규모

전체 응답자의 48%가 5억원 이하, 62%가 10억원 이하이며, 디자이너 본인을 포함한 근무자수는 5인 이하 57%, 10인 이하 71%로 매출액과 종사자수 측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

##### ○ 주고객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디자인 개발위탁자 유형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49%, 개인 3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11%, 기타 4%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4.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실태

#### ○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 불공정거래유형

주얼리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모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를 갖고 있음

- 계약서 작성 없이 개발을 수행하여 ①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함 ②개발 중단하고 비용 보상 받지 못함 ③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도용하여 다른 업체에 개발 진행 ④보수 감액 등의 피해를 경험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①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② 손해 보상 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결과물을 다른 업체에게 진행시키는 등의 피해를 경험

- 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추가 하면서 ①추가 개발비용 불인정 ②계약 기간 내 변경 내용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 일방적 해제 및 비용 불인정 등의 피해를 경험
- 개발 완료 후 ①보수 일방적 감액 또는 잔금 미지급 ②지연지급 ③출장비, 샘플비 등 불인정 및 미지급 등의 피해를 경험
- 디자이너의 동의 없이 개발 결과물의 ①변경 출시 ②개발 결과물의 구성요소의 일부 변경을 통한 유사 디자인 제작 및 출시 ③개발과정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콘셉트, 디자인 시안의 도용 출시 등의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경험

## 5.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특징

###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 (디자인 실명제)디자이너의 성명표시권 강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이중보호대상이 되는 주얼리디자인의 창작자의 성명 표시권을 계약서에 규정

비상업적 목적의 작품연표 등의 구성에서의 창작권 표시 권리 규정

#### ○ 디자인에 대한 개작, 유사 디자인의 창작, 2차적저작물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규정

계약 당사자의 주요 분쟁 발생원인인 디자인 개작, 원디자인에 기초한 파생 디자인(2차적저작물)의 창작 및 출시 등을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규정

###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 지식재산권 보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표준화된 단계별 업무 수행내용과 그 결과물의 발주자의 이용방법 등과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된 중간인도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절차 규정



○ 현업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문제점 개선

인테리어디자인 실무에서 사용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업무 및 보수기준”의 표준계약서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실무적용도 제고

## 6.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한 표준계약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디자인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활용도 제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의 지표로 반영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의 지표로 반영하여 대기업의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 - 목 차 -

<b>I. 서 론</b> .....	<b>1</b>
제 1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	1
제1절 용역추진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용역범위 및 목표 .....	2
제 2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목적 및 연구방법 .....	3
제1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3
제 3장 디자인 개발 계약의 법률관계 .....	4
제1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의의 .....	4
제2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 .....	5
제3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법률관계 .....	8
제4절 디자인 개발계약과 지식재산권 .....	12
제4장 디자인 개발 계약의 쟁점 .....	20
<b>II.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b> .....	<b>25</b>
제 1 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	25
제1절 계약실태 분석개요 .....	25
제2절 설문조사결과 .....	26
제 2 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32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	32
제2절 표준계약서 .....	33
<b>III.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b> .....	<b>41</b>
제 1 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	41
제1절 계약실태 분석개요 .....	41
제2절 설문조사결과 .....	42
제 2 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47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	47
제2절 표준계약서 도출 .....	48
별첨 1)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 .....	57
별첨 2)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안) .....	64



## - 표 목 차 -

<표 3-1> 주얼리 디자이너 매출수입 대비 디자인 매출수입 .....	26
<표 3-2> 주얼리 디자이너 주요 고객 분석 .....	27
<표 3-3> 주얼리 디자이너 판매장 보유현황 .....	27
<표 3-4>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등록현황 .....	27
<표 3-5> 주얼리 디자이너 매출규모 .....	27
<표 3-6> 주얼리 디자이너 조직규모 .....	28
<표 3-7> 계약서 미작성 피해의 개발위탁자 .....	28
<표 3-8> 계약 일방 해지 피해의 개발위탁자 .....	28
<표 3-9>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미배상 개발위탁자 .....	29
<표 3-10> 보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개발위탁자 .....	29
<표 3-11>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 .....	29
<표 3-1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 .....	30
<표 3-13> 디자인 변경 출시 피해의 개발위탁자 .....	30
<표 3-14> 디자인 개발용역 수행계획서 예시 .....	34
<표 4-1> 인테리어 디자이너 매출액 규모 .....	42
<표 4-2> 인테리어 디자이너 근무자수 .....	42
<표 4-3> 디자인 개발위탁자 유형 .....	43
<표 4-4> 인테리어디자인 설계비 산출기준 .....	43
<표 4-5> 계약서 미작성 피해의 개발위탁자 .....	43
<표 4-6> 일방적 계약해지 피해의 개발위탁자 .....	44
<표 4-7>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미배상 개발위탁자 .....	44
<표 4-8> 보수 체불 개발위탁자 .....	44
<표 4-9> 계약 내용의 무리한 변경 개발위탁자 .....	45
<표 4-10>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 .....	45
<표 4-1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개발위탁자 .....	45
<표 4-12> 디자인 일방적 변경 시공 개발위탁자 .....	45
<표 4-13> 디자인 도용자 유형 .....	46
<표 4-14> KOSID 표준계약서 개정(안) .....	55

# I. 서론

## 제1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 제1절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 1.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용역 공정거래환경 조성사업 실행
  - 디자인진흥원이 2010년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sup>1)</sup> 결과는 디자인 개발위탁계약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디자인전문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디자인산업과 해당 디자인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디자인진흥원은 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와 이를 수행할 디자인전문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 개발위탁 계약에서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sup>2)</sup>
  - 디자인진흥원은 2012년 5월 디자인 개발위탁계약에서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10월 제품, 시각, 멀티미디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공청회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품 등 3종의 계약서와 성과보수 지급형 제품 디자인 용역표준계약서를 확정
  - 산업부는 디자인 용역 계약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인에 대한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분쟁을 예방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여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2013.6.13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9호)"를 고시하고, 2013.7.5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16개, 특허청

1)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보고서」 2010.10

2)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2년 공정거래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디자인사업 대가기준(안) 발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13. 7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특허청은 선제적인 디자인 권리보호체계인 디자인공시증명제도 출범

등 17개청,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17개,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에 공정한 디자인 용역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활용 협조요청" 하였음

○ 디자인진흥원은 2013년 분야별 디자인 용역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야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로 결정

- 디자인진흥원은 2013년 분야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분야별 디자인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귀금속·보석디자인(이하 '주얼리디자인'이라 함)과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을 결정하고 연구용역 발주

## 2. 목적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개발위탁 계약실태 분석을 통한 귀금속·보석/인테리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 제2절 용역범위 및 목표

### 1. 용역범위 및 목표

○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 주얼리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실태 분석
- 주얼리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수성 분석
- 국외 주얼리디자인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사례조사 및 분석
- 주얼리디자인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인테리어디자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 인테리어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실태 분석
- 인테리어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수성 분석
- 국외 인테리어디자인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사례조사 및 분석
- 인테리어디자인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제2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목적 및 연구방법

### 제1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은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디자인 개발계약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디자인 개발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디자인 용역은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상호 신뢰로부터 최선의 결과가 산출되며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서면계약서로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분야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은 각 분야의 개발계약의 관행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용역 표준계약서의 실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 제2절 연구방법

-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 실태 분석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에 대한 계약실태 설문조사결과 분석
  - (사)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회원에 대한 계약실태 설문조사결과 분석
-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 분석
- 지식재산권 이전(사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법률 연구
- 국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외 주얼리/건축 관련 협회 등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및 분석
  - 미국그래픽아트협회(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 표준계약서와 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표준계약서 연구결과<sup>3)</sup> 활용
- 쟁점 및 해결방안 도출
-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연구

3) 신화회계법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활성화 방안 연구」 2012.10

## 제3장 디자인 개발 계약의 법률관계

### 제1절 디자인 개발 계약의 의의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sup>4)</sup>(이하 “디자이너”라 한다)가 디자인<sup>5)</sup> 개발 등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디자인 개발의 업무 내용에 따른 분류

디자인 개발계약은 업무 내용에 따라 디자인 개발용역과 디자인 컨설팅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디자인 개발용역

디자이너가 발주자의 디자인 실시<sup>6)</sup>를 위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디자인 개발 참여정도에 따라 전담형 디자인 개발과 부분참여형 디자인 개발로 구분된다.

전담형 디자인 개발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 콘셉트 도출, 디자인 시안 개발 및 최종 디자인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계약이며, 부분참여형 디자인 개발은 발주자가 제시한 디자인 전략과 기획 등에 따라 디자이너가 디자인만을 개발하는 계약을 말한다.

##### ○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디자인 개발을 제외한 시장조사, 디자인 트렌드 조사, 디자인 전략수립, 디자인 콘셉트 도출 등의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1항.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1호.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6호.“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디자인 분야에 따른 분류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인 분야에 따라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포장 디자인 개발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시각 디자인

발주자가 의도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 제품 디자인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형태가 아름답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과 제품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 환경 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등)

인간의 쾌적한 삶,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 정비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 기타

상기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계약이다.

## 제2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

### 1.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

#### (1) 하나의 물품 하나의 디자인

디자인 개발계약은 발주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물품을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물품이 유통되는 시장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목적과 기능을 가진 물품의 형상·모양·색상과 구별되는 외적 형상을 창조하는 작업으로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디자인만이 성립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이러한 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성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통상의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의 조합을 통해 구현할 수 없을 것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특성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디자이너의 디자인은 보호할 만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이 된다.

## (2) 발주자와 소비자의 분리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최종소비자는 발주자가 소구하고자 하는 계층, 집단으로 발주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용역의 성공 여부는 발주자의 디자인 실시에서 최종 확정된다.

발주자와 소비자의 분리라는 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성은 계약의 이행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디자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발주자간의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3) 계약 체결시점에서 결과물 미확정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계약 체결시점에서 개발 결과물(형상, 모양, 색상, 공간, 재료 등)이 시각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개발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된다.

통상 디자인은 계약 체결 이후 시장 조사, 디자인 전략 수립, 아이디어 도출, 디자인 시안 제시 및 발주자의 디자인 시안의 선택과 선택된 시안의 구체화 작업을 통하여 최종 디자인의 완성 및 발주자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계약 체결시점 및 개발과정에서의 디자인 미확정 및 구체화는 개발과정과 완료시점에서 디자이너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발주자와 디자이너와의 분쟁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디자이너는 디자인 용역 수행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되는 중간인도물에 대한 내용과 발주자의 검사 및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4) 디자인 개발용역은 지식재산 창출과정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로서 지식재산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sup>7)</sup>이고, 디자인 개

7)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2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발용역은 지식재산권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발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디자이너가 개발하는 과정이다.

디자인 개발용역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sup>8)</sup>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과 계약 이행 결과물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란 발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시·인도된 디자인 시장조사 등의 보고서, 디자인 시안 등의 도면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계약 이행 결과물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란 발주자가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검사하고 승인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디자인 개발용역의 특성은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발주자에게 검수·인수된 디자인에 대한 개작, 그 디자인에 기초한 유사 디자인의 창작, 그 디자인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제3자로부터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5) 권리침해의 용이성

디자인은 외관 형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비해 도용가능성이 크며, 색채·비례·형태 등 일부 조형적 변경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 형성이 가능하고 유행성으로 인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점은 창작과 모방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며<sup>9)</sup>, 특히 전산화된 디자인 개발 환경(CAD/CAM<sup>10)</sup>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이너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단시간 내에 복제 또는 전산데이터의 수치 변형을 통한 유사 디자인의 출력과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권리침해의 용이성은 제3자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와 발주자의 디자이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쉽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발주자의 디자이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이전과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 이용에

---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3호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9) 안선우, 『한국디자인법의 구조와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67쪽

10) Computed Aided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Computed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한 원형제작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제3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법률관계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인 개발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전형계약의 일종인 도급계약과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해 원시적으로 디자이너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실시계약이 혼합된 혼합계약이다. 혼합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계약의 유형(도급계약과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실시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원시적으로 디자이너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이란 의미는 지식재산권 법률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작자인 디자이너는 창작 사실의 증명만으로 취득<sup>11)</sup>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법률이 지식재산의 창작자를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자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대외적으로 디자인의 독점적 실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에게 귀속된 등록받을 권리의 이전 또는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대한 별도의 이전 또는 실시계약이 필요하다.

### 1. 도급계약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전형계약의 일종인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 2. 도급계약의 법률 효과

#### (1) 디자이너의 권리와 의무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할 것을 의무로 발주자에 대한 권리(보수청구권)가 확정된다.

11) 저작권법의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요건이 등록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음

## 가. 의무

### ○ 디자인 개발 완성 의무

디자이너는 적당한 시기에 용역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디자인 개발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디자이너는 개발을 완성하기 위하여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제3자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 의무

디자이너는 완성된 디자인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 고지의무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지시가 용역 결과물인 디자인에 하자를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하였을 경우 그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인테리어디자인 개발에서 발주자의 요청이 건축 법규 등에 위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디자인 개발(설계)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디자인의 하자(건축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실시 불가능)에 대해서는 담보책임(하자 보수책임)을 부담한다.

### ○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란 개발된 디자인이 하자가 있는 때에는 디자이너는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디자이너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하자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 계약관계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개발된 디자인의 하자란 계약상 하자과 계약외적 하자과 분류할 수 있다. 계약상 하자란 계약에서 정한 규격,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의미하며, 계약외적 하자란 개발된 디자인의 실시·전개가 법적 규제 요건의 위배 또는 공학적 실현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실시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발주자가 복수의 디자인 시안 중 선택한 디자인 시안의 대한 최종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발주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른 클레임은 하자가 아니며 발주자의 의사표시로 수정을 요한다.

하자보수의무는 개발된 디자인을 당사자의 계약요건의 충족 또는 법적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디자인 변경으로 이행된다.

## 나. 권리

### ○ 보수청구권

디자이너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체결 시에 성립하고 디자인 개발 완성(인도)으로 확정된다.

보수의 지급(청구)시기는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도 없으면 개발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보수의 일부를 선급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이너는 그 대금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청구권

발주자가 개발을 완성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디자이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발주자의 의무

### ○ 보수지급 의무

발주자는 개발이 완료되어 결과물이 인도됨과 동시에 용역 보수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 검수의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인도한 경우 디자인이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의 목적물로서 승인한 다음에 수취해야 한다. 즉, 디자이너가 계약의 내용에 좇아 완성한 용역 결과물을 지체 없이 검수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디자이너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sup>12)</sup>

○ 협력의무(부수적 의무)

발주자는 디자이너가 발주자가 의뢰한 디자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할 의무 등이 있다.

### (3) 계약의 해제

#### 가. 발주자의 해제권

① 법정해제권<sup>13)</sup>

발주자는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제권<sup>14)</sup>

개발 결과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비록 디자이너가 보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주자는 디자이너가 일의 착수를 해태하는 때에는 이행지체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발주자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sup>15)</sup>

1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1109쪽 요약 . “민법은 발주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검수의무는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디자인 개발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말한다. 독일 민법은 계약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검수하지 않은 목적물의 인도는 이행의 완료로 보지 않고 있음”

13)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4)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총칙)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아니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 총칙)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나. 디자이너의 해제권<sup>16)</sup>

디자이너는 발주자가 파산선고 등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가 명백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절 디자인 개발계약과 지식재산권

본 절에서는 발주자가 인수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신규성·창작의 비용이성·독창성)을 충족하는 것과 저작권법의 저작물로서의 요건(물품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sup>17)</sup>을 충족하여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이중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권리관계를 검토한다.

### 1. 디자인 개발계약과 지식재산권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디자이너는 실시예 하자 없는 디자인의 인도으로써 계약 이행을 완료하나, 발주자는 제3자의 디자인 복제 또는 유사 디자인의 출현으로 인하여 인수된 디자인의 실시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타인의 디자인 복제 등으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고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자 없는 디자인의 인도가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의미는 등록의 절차(저작권은 등록절차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의 이행을 통하여 확보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이전(매매 또는 사용승낙(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이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전 등이 계약 이행의 목적물인 디자인의 실시예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법률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권리자를 디자인 창작의 계기(타인의 위탁 또는 자가)와 상관없이 창작자 또는 저작자(이하에서는 “창작자”로 한다)로 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의 침해 없이 디자

16) 제5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7) 특허법인 세하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2.9 “분리가능성 원칙이란, 실용품의 디자인은 그 물품의 ‘기능적, 실용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고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간주되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인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전의 추가적인 절차란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의 등록받을 권리의 승계 또는 디자인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사용승낙 등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권리자인 디자이너와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실행된다.

## 2. 지식재산권의 이전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의무

### (1) 디자인 개발계약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디자인 개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된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디자이너와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는 사용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발주자에게 검수 후 인수된 디자인의 대내적 독점적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나 지식재산의 대외적 독점적 실시를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의 원시적 권리자는 디자이너에게 있다.

디자인 개발계약은 발주자는 디자이너가 개발·인도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발주자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디자이너 간의 독점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 즉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의 사용 배제와 개발된 디자인의 제3자 제공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주자의 대외적 독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의 이행을 통한 권리의 보전이 필요하다.

### (2) 발주자의 디자인 독점 실시를 위한 권리의 보전방법

독점적 실시를 위한 권리의 보전(지식재산권의 이전)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 또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의 설정(사용승낙)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합의에 의하여 이전의 방법과 지식재산권의 사용범위를 결정한다.

#### ① 양도

양도의 대상은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이며, 양도를 통하여 발주자는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자, 등록

18) 단,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보는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승계자, 저작재산권의 양수자로서 디자인 실시에 관한 모든 권리<sup>19)</sup>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실시권의 설정

지식재산권자인 디자이너가 디자인권 또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사용의 허락으로 발주자는 실시 범위에 따라 디자인 실시에 관한 권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권리의 이전방법 중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의한 방법은 디자이너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등록 한 후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제외한 독점적 실시에 대한 실시권의 설정 또는 승낙(저작재산권)으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다. 즉 디자이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이고 발주자는 디자이너와 합의된 방법과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실행하는 (전용)실시권자이다.

이하의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통한 이전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한다.

#### (1)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지위와 권리

디자이너는 디자인<sup>20)</sup> 또는 응용미술저작물<sup>21)</sup>을 창작한 자로서의 지위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을 가진다.

발주자는 디자이너와의 합의를<sup>22)</sup> 통해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재산권의 양수자의 지위를 갖는다.

발주자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에 따라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9)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이전된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2항

20)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1항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

21) 「저작권법」 제2조(정의)15호“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2) 합의란 지식재산권의 이전방법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 즉 양수의 방식 또는 실시권의 설정 또는 허락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발주자에게 승계되는 저작권은 저작자 일신에게 귀속되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sup>23)</sup>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대여 등의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 (2)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1) 발주자의 권리 및 의무

#### ○ 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을 권리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물로 인수한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sup>24)</sup>를 가지며 디자이너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을 창작하였을 경우 “유사디자인의 인수 및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sup>25)</sup>를 가진다.

#### ○ 디자인권 및 저작재산권의 양수자로서의 권리

발주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sup>26)</sup>하며 디자이너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단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sup>27)</sup>는 특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 대금지급의무

발주자는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권리의 인수대가로 디자이너와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3)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공표권은 양수자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며,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수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24)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5) 디자인보호법 제7조(유사디자인),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1항 단서“ ...다만, 기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26) 디자인보호법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27)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제5조(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2항)



○ 디자인 창작자(디자이너)의 성명 표시 의무

발주자는 디자인 등록을 위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디자이너의 성명 및 주소를 표시”<sup>28)</sup>하여야 하며, 디자인 실시에 있어 디자이너와의 협의를 통해 “디자이너의 성명을 표시”<sup>29)</sup>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발주자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사유<sup>30)</sup>는 아니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인격권의 성명표시권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디자이너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디자이너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이전 의무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양수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도면 등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도면 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저작인격권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창작자로서의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와 발주자가 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 자신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발주자는 디자인을 실시 할 때 디자이너와 합의된 방식으로 디자이너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2차적저작물 또는 유사디자인의 창작 및 이용권리

디자인에 대한 형상·모양·색채의 변형 및 변형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8) 디자인보호법 제9조(디자인 등록출원)제1항6호 “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9)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제2항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 디자인보호법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제1호

## 가. 정의

- ㉠ 유사디자인이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한다.<sup>31)</sup>
-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sup>32)</sup>
- ㉢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sup>33)</sup>

## 나. 디자인에 대한 개작권리

### ㉠ 디자이너의 저작권 발생시기

디자이너의 저작권 발생시기란 디자인 개발계약으로 창작한 디자인의 저작권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을 말하며, 저작권은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인도한 디자인을 발주자가 검수하고 승인한 때부터 발생한다. 즉, 디자인 완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무가 최종인도물에 대한 발주자의 검수와 승인으로 완료되고 추가적인 계약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계약의 목적물인 디자인은 발주자가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인수의 통지가 디자이너에게 도달한 때 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 ㉡ 인수된 디자인에 대한 변형(개작)에 대한 권한

저작권법은 저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인수(확정)된 디자인에 대한 개작 또는 변형은 발주자에게 있지 않고 디자이너에게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이의를 불인정”<sup>34)</sup>한다.

따라서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인수된 디자인의 변경 또는 인수된 디자인과 유

31) 디자인보호법 제7조(유사디자인)

32)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33)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제1항

34)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제2항

사한 디자인을 창작할 권리는 디자이너에게 있다.

## 다. 2차적저작물 창작권리

### ㉠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와의 특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sup>35)</sup>

2차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저작자의 권리로 한 저작권법의 취지는 타인(지식재산권을 양도받은 자 포함)의 2차적저작물의 창작은 본질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이므로 저작자 일신에 귀속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계약에서의 발주자는 디자이너의 동의 없이 디자이너가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인도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상 또는 색채, 비례, 재료 등의 변형을 통한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유사디자인과 2차적저작물

유사디자인이란 발주자가 인수한 디자인의 형상 등의 변형을 통하여 창작된 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말하며, 디자인보호법의 유사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즉 유사디자인이란 디자인에 기초하여 창작된 2차적저작물의 일종으로 간주<sup>36)</sup>할 수 있다.

### ㉢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 문제점

디자인 개발계약의 당사자인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 디자이너가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여 원창작물의 발주자가 아닌 제3자에게 2

35)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동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 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36)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가감을 통하여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을 기초로 형상 등의 단순한 변형을 통하여 창작한 유사한 디자인일 경우 저작권법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디자인도 2차적저작물의 범주에 포함

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실시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원창작물과 2차적저작물이 화체된 물품의 실시에서 경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합은 발주자의 원창작물 개발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원창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경합 및 시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있어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전할 것”<sup>37)</sup>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디자인권의 양도도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을 함께 양도”<sup>38)</sup>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㉔ 소결

디자인 개발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는 디자이너의 동의를 얻지 않고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 또는 개작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을 기초로 형상, 모양, 색상의 일부 변경을 통한 유사디자인을 창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자이너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과 이용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발주자의 디자인권의 독점실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7)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1항 “...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38) 디자인보호법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제1항 “...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제4장 디자인 개발계약의 쟁점

### 1. 디자인 개발계약의 쟁점

디자인 개발계약의 쟁점이란 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서 발주자와 디자이너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을 말하며, 계약 성립단계에서의 쟁점, 계약 이행에서의 쟁점과 계약 완료 시점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쟁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디자인 개발계약의 쟁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0년 10월에 발간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주요 분쟁 사례와 디자이너의 권리침해 피해사례 유형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디자인 개발계약의 주요 쟁점과 쟁점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1) 계약 성립

##### ① 보수의 지급방법 및 시기

보수의 지급방법 등에 대한 쟁점은 보수의 지급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지불, 선불 또는 후불), 분할 지불의 경우 분할 지불의 시기 결정의 문제를 말한다.

디자인 개발계약은 디자이너의 노무제공으로 이행되며, 시간의 경과와 계약의 이행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므로 보수의 지급방법은 분할지불방법이 타당하며, 또한 분할지불방법은 발주자의 보수지급의무의 지체를 감소시켜 디자이너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 당사자는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용역을 임의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의 완료 행위를 기준으로 분할지불의 시기로 결정하거나 디자이너가 제안한 디자인 개발과정(Design process)의 수행계획에 따라 분할지불의 시기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발생경비의 귀속과 정산

발생경비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목업(mock-up) 제작비용, 여비, 도면 인쇄비, 자료조사비, 발주자의 특별 요청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발생 경비의 쟁점은 발생한 경비의 부담 주체와 발생한 경비의 정산방법, 정산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용역보수는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경비(직접경비와 간접경비)와 이윤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창작자의 보수에 포함되어 발주자에게 전가되든 보수와 구별하여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든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자이너는 계약 체결단계에서 경비 발생 예상액을 고지하고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정산방법을 합의하여 발주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발생경비는 발주자가 직접 비용의 청구자에게 결제하거나 디자이너에게 결제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에게 결제할 경우 발생 즉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계약 이행단계

### ③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이란 발주자가 최초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기존 계약 이외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 보다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쟁점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디자이너가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인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보수의 추가 지급, 계약 내용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것이다.

변경의 합리적 수용의 가능 여부는 디자이너의 계약 해제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은 디자이너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 당초 계약의 용역범위를 초과하여 투입시간 등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디자이너의 투입시간 및 비용의 증가에 대한 추가보수의 산출방법과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이너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디자이너의 보수 증가액의 산출기준(예: 개발인력의 시간당 보수)을 사전에 고지하여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발주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는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계약 당사자의 계약이행 불능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을 말한다.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의 쟁점은 일방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다.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의 책임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타방에게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따라 산정된다.

#### ⑤ 중간인도물의 검수 및 승인

중간인도물의 검수 및 승인이란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된 보고서, 디자인 시안 등에 대한 발주자의 검사 및 승인을 말하며,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검수 및 승인을 통하여 계약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며 계약에서 정한 다음 단계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간인도물의 검수 및 승인절차는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에서 디자이너의 계약의 이행정도, 보수 분할지급에서의 보수 청구시기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중간인도물의 검수 및 승인의 쟁점은 검수일정과 검수결과의 통지방법이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유형 중의 하나가 디자이너의 검수 요청에 대한 검수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반대사유의 표명과 재작업 요구이다.

중간인도물에 대한 검수는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수행하여 검수 지연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중간인도물에 대한 승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거절의 의사표시는 디자이너가 중간인도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

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3) 계약 종료단계

#### ⑥ 최종인도물의 검수 및 인수

최종인도물의 검수 및 인수란 디자이너가 계약이행의 목적물로 인도한 디자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절차로서 디자이너는 발주자의 검수·승인으로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보수청구권이 확정된다.

최종인도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거절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거절의 의사표시는 디자이너가 최종인도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⑦ 지식재산권(제3장 제4절 디자인계약과 지식재산권 참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쟁점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디자인에 대한 개작 권리,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다.

지식재산권의 귀속·이전과 이전된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권리와 의무는 지식재산권 법률을 기초로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상호신뢰의 원칙 아래 결정되어야 한다.

### (4) 계약 종료 후

#### ⑧ 제3자에 대한 손해

제3자에 대한 손해의 쟁점은 제3자의 손해의 내용과 디자이너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이다.

디자인 개발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란 디자이너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디자이너는 디자인 개발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최종디자인의 검수과정에서 최종인도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이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보수를 한도로 한다.

### ⑨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은 통상의 성과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수익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자이너에게 계약 보수 이외에 지급하는 수익을 말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의 쟁점은 배분수익의 산정 방법, 지급시기 및 배분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검증이다.

배분수익의 산정은 개발된 물품의 수량기준 또는 금액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수량기준은 제조장 출하수량 또는 판매장 매출수량에 단위당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금액기준은 물품 매출총액에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지급시기는 발주자의 산정기준에 따라 수량 또는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원칙이다.

배분금액의 적정성 검증이란 발주자의 수익 배분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디자이너가 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은 발주자의 디자인 개발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을 낮추고 디자이너에게는 성공적인 디자인의 개발에 따른 추가수익의 배분을 통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있어 성공적인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 II.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제1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 제1절 계약실태 분석개요

##### 1. 조사<sup>39)</sup>목적 및 방법 등

###### (1) 조사 주관기관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 (재)한국디자인진흥원

###### (2) 조사목적

설문조사는 주얼리 디자이너(주얼리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회사 또는 개인)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과 그 유형을 분석하여 주얼리디자인 용역계약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조사대상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 전부와 미가입 주얼리 디자이너 총 200명

###### (4) 조사방법과 한계

- ① 조사방법 : 전자우편 설문조사와 통신면접
- ② 회신률 : 모집단 및 표본 200/ 회신 104(회신률: 50.8%)
- ③ 한계

본 조사는 신뢰도, 오차범위 등의 설계를 통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설문조사가

39) 주얼리 디자이너 계약실태 분석은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산하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영미)”가 2013.7.2부터 2013.7.19까지 협회 회원과 협회가 보유한 주얼리디자이너 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얼리 디자이너 디자인 개발계약 실태 분석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음.

아닌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므로 설문 조사의 결과가 한국 주얼리 디자이너의 디자인 개발계약의 실태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조사대상 표본의 수(200명)와 응답자 수(104명)를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추계한 한국 주얼리 디자이너 고용규모 809명<sup>40</sup>과 대비하면 한국 주얼리 디자이너의 계약실태 분석에 충분한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조사기간 : 2013.7.2~2013.7.12

## 제2절 설문조사결과

### 1. 주얼리 디자이너(응답자) 특성

주얼리 디자이너는 제품, 시각 등의 다른 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와 달리 디자인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전문회사의 비율이 낮고, 자신의 브랜드와 매장을 통해 직접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으며, 매출 규모와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약 96%가 소기업에 해당<sup>41</sup>)

#### ① 디자인 매출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디자인 매출이 전체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 43%, 30%~50% 13%, 50% 이상 14%, 없다 29%로 주얼리 디자이너는 디자인 개발만을 업으로 하는 디자인전문회사의 비중이 낮음

<표3-1> 주얼리 디자이너 매출수입 대비 디자인 매출수입 비율

구분	디자인 매출				없음	합계
	30%	50%	50% 이상	소계		
응답자수	45	14	15	74	30	104
비율(%)	43	13	14	71	29	100%

#### ② 주요 고객 현황(복수 응답)

주고객 비율은 일반소비자 45.8%, 주얼리 브랜드기업, 도매상 등이 43.5%, 기타

40)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한국주얼리디자인포럼2011」 주얼리디자인산업현황. 주얼리 디자이너 고용규모 예상

4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별표1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의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10.7%로 일반소비자의 비중이 높음

<표3-2> 주얼리 디자이너 주요 고객 분석

구분	간접 판매				직접 판매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계			
응답자수	15	24	18	57	60	14	131
비율(%)	11.5	18.3	13.7	43.5	45.8	10.7	100

③ 판매장 보유 현황

주얼리 디자이너의 42.3%가 판매장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음

<표 3-3> 주얼리 디자이너 판매장 보유현황

구분	보유				비보유	합계
	1개	2개	3개	소계		
응답자수	31	7	6	44	60	104
비율(%)	29.8	6.7	5.8	42.3	57.7	100

④ 주얼리 브랜드 등록현황

주얼리 디자이너의 58.7%가 자신의 브랜드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음

<표 3-4>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등록현황

구분	보유				비보유	합계
	1개	2개	3개 이상	소계		
응답자수	34	23	4	61	43	104
비율(%)	32.7	22.1	3.9	58.7	41.3	100

⑤ 매출규모

1억 이하 매출 61.5%, 2억 이하 매출 72.1%로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는 작음

<표 3-5> 주얼리 디자이너 매출규모

(단위: 만원)

구분	1,000	5,000	10,000	20,000	30,000	50,000	100,000	100,000~	합계
응답자수	39	15	10	11	7	6	4	12	104
비율(%)	37.5	14.4	9.6	10.6	6.7	5.8	3.8	11.5	100
누계	37.5	51.9	61.5	72.1	78.8	84.6	88.5	100.0	

\* 매출액 기준금액은 구간을 표시.(예: 10,000만원은 5,000만원~10,000만원을 표시)

## ⑥ 조직규모

10인 이하 조직에 속한 디자이너의 비율이 전체의 88.5%이며, 특히 5인 이하의 조직에 속한 디자이너가 77.9%를 차지

<표 3-6> 주얼리 디자이너 조직규모

구분	1	2	3~5	6~10	11~20	21~100	100이상	합계
응답자수	41	8	32	11	8	2	2	104
비율(%)	39.4	7.7	30.8	10.6	7.7	1.9	1.9	100
누계	<b>39.4</b>	<b>47.1</b>	<b>77.9</b>	<b>88.5</b>	96.2	98.1	100	

## 2. 디자인 개발계약에서의 권리침해 유형 등

###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계약서 작성 없이 디자인 개발을 수행하여 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37.8%로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 31.7%, 주얼리 도·소매상 43.3%, 일반소비자(18.3%),기타(6.7%)

<표3-7> 계약서 미작성 피해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19	15	11	45	11	4	60
비율	31.7	25.0	18.3	75.0	18.3	6.7	100

### ○ 일방적 계약해지

설문 응답자의 41.3%가 디자인 개발계약에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으며, 일방적 계약해지의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28.1%), 주얼리 도·소매상(43.9), 일반소비자(22.8%), 기타(5.2%)

<표3-8> 계약 일방 해지 피해의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16	13	12	41	13	3	57
비율	28.1	22.8	21.1	72	22.8	5.2	100

○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설문 응답자의 45.2%가 계약에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26.1%), 주얼리 도·소매상(26.4%), 일반소비자(23.2%), 기타(4.3%)

<표3-9>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미배상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18	16	16	50	16	3	69
비율	26.1	23.2	23.2	72.5	23.2	4.3	100

○ 보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설문 응답자의 41.3%가 개발 완료 후 보수 잔금의 체불 등의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30.0%), 주얼리 도·소매상(45.0%), 일반소비자(21.7%), 기타(3.3%)

<표3-10> 보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18	14	13	45	13	2	60
비율	30	23.3	21.7	75.0	21.7	3.3	100

○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설문 응답자의 50.0%가 계약 후 계약 내용에 없는 무리한 디자인 개발 또는 수정 작업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34.7%), 주얼리 도·소매상(43.0%), 일반소비자(22.3%)

<표3-11>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25	14	17	56	16	-	72
비율	34.7	19.4	23.6	77.7	22.3	-	100

○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설문 응답자의 36.5%가 무리한 수정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47.9%), 주얼리 도·소매상(39.7%), 일반소비자(12.4%)

<표3-12>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35	16	13	64	9	-	73
비율	47.9	21.9	17.8	87.6	12.4	-	100

○ 지식재산권 침해로 사유로 위탁자의 손해배상 요구

설문 응답자의 11.5%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34.6%), 주얼리 도·소매상(50.0%), 일반소비자(11.3%)\*, 기타(3.8%)

\* 일반소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손해배상 주체가 아니므로 설문 응답자의 착오로 추정됨

○ 디자인 결과물의 일방적 변경 출시

설문 응답자의 39.4%가 디자이너의 최종 디자인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출시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주얼리 브랜드(25.9%), 주얼리 도·소매상(69.0%), 일반소비자(3.3%)\*, 기타(1.7%)

\* 최종 디자인의 변경 출시란 발주자의 일방적 변경을 통한 디자인의 실시('업'으로서)를 말함. 따라서 일반소비자의 변경 출시는 응답자의 착오로 추정됨

<표3-13> 디자인 변경 출시 피해의 개발위탁자

구분	상업적 개발위탁자				일반소비자	기타	합계
	기업	도매상	소매상	합계			
응답자수	15	23	17	55	2	1	58
비율	25.9	39.7	29.3	94.9	3.3	1.7	100

○ 기타

- 출장비, 샘플비 등의 불인정 및 미지급



-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제시한 디자인 시안의 도용
- 디자인 개발과정에서의 수정사항 요구 과다
- 주얼리 소매상의 디자인 도용
- 개발 의뢰 후 일방적 취소

###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주얼리 디자이너 특성

주얼리 디자이너는 다른 분야 디자이너와 달리 최종소비자(45.8%)를 고객으로 소규모 조직(5인 이하 77.9%)으로 자신의 브랜드(58.7%)로 판매장(42.3%)을 소규모(2억 이하 매출 72.1%)로 운영하며, 디자인 개발과 일반소비자 판매를 겸업(총매출 대비 디자인 매출비율 50%이상 14%)하고 있다.

#### ○ 권리침해 경험

디자인 개발을 위탁받은 주얼리 디자이너는 다른 분야의 디자이너와 동일한 유형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전산화된 디자인 개발환경에서 발주자의 원디자인에 기초한 파생디자인의 제작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 제2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 1. 표준계약서의 도출방법

표준계약서는 주얼리디자인 용역 거래실태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불공정 거래유형)의 도출과 주요 쟁점에 대한 「민법」의 도급계약과 지식재산권법의 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 2. 표준계약서의 목적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와 디자이너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계약의 목적))

#### 3. 적용범위

##### (1) 주얼리디자인의 정의

주얼리디자인이란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의 가치와 관계없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일체의 장신구 디자인으로써 귀금속·귀보석을 결합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가의 패션 장신구(패션주얼리) 디자인을 포함한다.

##### (2)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

표준계약서는 개발된 디자인을 업으로써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자와 디자이너간의 디자인 개발계약에 적용한다.

개발된 업으로 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적 소비를 위한 일반소비자는 본 표준계약서의 발주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의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제2절 표준계약서

### 1. 용어의 정의(제2조)

#### (1) 계약서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제시하여 합의된 업무범위, 업무수행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디자이너의 제안서와 기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디자이너의 제안서란 발주자가 의뢰한 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제안한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법, 일정, 발주자에게 제시될 중간인도물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디자인 개발의뢰는 발주자가 인식한 특정 환경의 산물이고, 발주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이너는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디자인 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특화된 방법과 절차는 제안서로 하고 본 계약서는 당사자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란 본 계약을 구성하는 내용의 변경, 즉 보수의 증액, 용역 일정의 연기, 디자이너 제안서의 변경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계약서를 구성한다.

#### (2) 중간인도물, 최종시안, 최종인도물

계약서는 디자인 개발과정을 “①정보수집/분석 및 상품기획단계 ②디자인 개발 및 시각화단계 ③디자인 확정 및 완료단계”<sup>42)</sup>로 가정하고 개발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제시(또는 인도)하는 디자인 시안 또는 분석보고서 등을 중간인도물로 하고 (①,②,③단계에서 제시된) 디자인 개발 및 시각화단계에서 제시하고 발주자가 선택한 시안(② 또는 ③단계에서 산출)을 최종시안으로 하고,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③단계에서 산출)을 최종인도물로 하였다.

최종인도물이란 개발된 디자인을 물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사양서, 시방서 또는 전산프로그램(CAD/CAM) 데이터(Data) 등 디자이너와 발주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42)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WJRC포커스 "디자인 보호가이드"의 주얼리 개발 프로세스 요약정리

### (3) 지식재산권과 2차적저작물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원창작물을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디자인보호법」의 '유사디자인등록권'의 대상인 유사디자인을 포함한다.

## 2. 주요 내용

### (1) 과업범위의 명확화(제2조1호)

발주자와 디자이너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 목적물의 내용과 개발 일정과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제시(또는 인도)되는 인도물의 내용과 방식,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 보수 산출시의 시간당 디자이너 보수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는 계약 일반조건이므로 개발 업무범위(목표와 성과물, 업무범위 등), 수행일정(기간 및 일정계획)과 발주자에게 제시(인도)될 성과물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도의 합의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별도의 합의서는 발주자의 요청사항과 디자이너의 용역수행 방법과 일정을 기재한 것이면 충분하며 그 형식과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단계별 용역수행의 산출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될 수 있을 것이다.

<표3-14> 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계획서 예시<sup>43)</sup>

단 계	내 용	산출물	비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	트렌드 분석 등 시장조사보고서	
분석 및 상품기획	디자인 콘셉트 설정 등	보고서	
디자인 개발 및 시각화	러프스케치, 2D드로잉 또는 3D 모델링 등	3개의 디자인 렌더링	
디자인 확정 및 완료	3D모델링 도면, 디자인 사양 및 시방서 제작, 디자인 목업(Mock-up)	최종 디자인 사양 및 시방서 또는 3D 전산 데이터, 최종 Mock-up	선택된 시안에 대한 최종 디자인 사양 및 시방서 등

43)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WJRC포커스 "디자인 보호가이드"의 주얼리 개발 프로세스 재정리

## (2) 보수(제3조, 제4조, 제5조)

발주자와 디자이너 간의 용역 보수 지급방법과 시기, 개발과정의 발생경비, 보수 지급지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수의 구성요소, 지급방법 및 시기, 보수 지연이자를 규정하였다.

### ① 보수의 구성

보수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와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실비 변상적 비용이란 출장여비, 목업(Mock-up)제작비, 전산시스템(CAD/CAM) 데이터 전환비용, 렌더링 인쇄비 등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실비 변상적 비용은 사전에 발주자에게 비용의 발생가능성과 금액 추정액 등을 고지하고 발주자가 부담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 ② 보수 지급방법

보수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분할 지급 또는 일시불 지급 등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계약서는 디자인 용역이 단계별로 구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고, 단계별로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산출물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③ 보수 지연지급 이자

연체이자란 발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디자이너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지연 발생시점(지급기한의 익일)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다.



### (3)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는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의 방법과 변경·추가로 인한 디자이너의 보수청구권과 추가 보수의 산출방법을 규정하였다.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란 발주자 또는 디자이너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과 범위, 일정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

계약 내용의 변경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된 계약조건의 합의서 또는 변경된 계약서 등 형식과 명칭 불문하고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디자이너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디자이너의 노무비 시간당 보수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디자이너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은 작업시간당 보수액으로 사전에 제안서에 기재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보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디자인 개발 일정의 단축은 통상 당초의 일정보다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개발일정 단축에 따른 추가보수를 협의하여 청구한다.

수작업에 의한 디자인 사양 및 시방서의 인도를 계약조건으로 하였으나 전산데이터(CAD/CAM Data)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수작업 데이터의 전산데이터 전환에 따른 비용은 추가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개발 일정이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발주자의 보수 지급지연 또는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지체의 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4) 발주자의 검수의무(제7조)

발주자의 검수는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의 정도, 대금 청구시기,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수절차와 검사결과 통지, 검수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발주자의 검수의무란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인도한 결과물(중간인도물 및 최종인도물)의 계약 내용과의 합치 여부와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승인·수취해야 하는 것<sup>44)</sup>을 말한다.

계약 내용과의 합치 여부란 발주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한 인도물(중간인도물과 최종인도물)이 계약 내용과 부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 검사란 최종인도물(즉 디자인)이 물품으로 구현되어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하자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도용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디자인 개발은 무형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시점에서는 계약 이행 목적물의 형상 등이 확정되지 않고 개발 진행에 따라 디자이너의 최종인도물로 시각적으로 확정 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은 발주자의 검사 및 인수에 따른 중간인도물과 중간인도물에 기초한 최종인도물에 대하여도 발주자의 주관적 선호도에 의한 주관적 불합격의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주관적 불합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가 검수절차이다.

발주자는 검수 후 특정 규격에 대한 불합격 또는 인도된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의 반대, 수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결과물에 대한 반대 등의 표시는 디자이너가 발주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과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 (5) 지식재산권(제8조)

지식재산권은 계약의 이행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 최종 결과물로 인수된 디자인에 대한 변경·변형 및 디자인을 원창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 ① 검수 후 인수된 최종인도물(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발주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발주자에게 인수된 최종인도물이란 발주자가 검수 후 승인한 물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무형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과 「저작권법」의

44) 김형배 「민법학개론」 1109page 참조. 신조사 2001년

저작권을 의미한다.

양도란 디자이너가 보유한 권리(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를 발주자에게 이전(승계)하는 행위이다.

### ② 최종인도물 이외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용역 수행과정 중에 발주자에게 제시된 디자인 시안, 디자인 콘셉트 등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며, 디자이너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③ 최종인도물의 변경·변형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발주자는 검수하고 인수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이너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동의 없는 변경은 디자이너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에 관한 권리)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발주자는 승계하여 등록한 디자인 또는 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발주자의 동의 없이 유사디자인 등록을 위한 유사 디자인을 창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디자인의 변형을 통한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자이너는 최종인도물의 형상 등의 변형을 통하여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발주자가 최종인도물을 물품으로 구현한 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인도물의 변형을 통한 유사디자인 또는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여 별도의 보수로써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권리와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

### ④ 성명표시권 및 공표권

발주자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디자이너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의 등록 및 양도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디자이너와 합의된 방식으로 물품 또는 물품의 선전을 위한 카탈로그 등에 창작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디자이너는 발주자가 최종인도물을 실시하기 전에는 최종인도물을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나, 발주자가 최종인도물을 실시한 경우에는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에 대한 광고 또는 창작연표의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홈페이지, 도록 등에 창작물을 표시할 수 있다.

## (6) 제3자에 대한 손해(제9조, 제16조)

제3자에 대한 손해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발주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친 손해를 의미한다.

디자인 개발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계약 이행의 목적물로 인도하고 발주자가 검수 후 승인한 최종인도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가지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주자는 최종인도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디자인의 실시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손해와 발주자에 끼친 손해배상은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 (7)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제13조, 제14조)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디자이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요건, 해지 또는 해제의 방법,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배상과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당사자 일방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 당사자 일방의 계약이행 불능사유의 발생,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

발주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할 경우 디자이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디자인 개발이 중지되었을 경우 중지로 인하여 디자이너의 경비 절감액과 디자이너가 수령한 보수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불한다.

발주자의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이 중지된 경우 보수는 업무수



행량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8) 기타

### ① 통지

통지란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고지, 독촉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통지는 서면에 의한 우편 또는 합의된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하여야 하며,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분쟁조정

분쟁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 계약의 분쟁조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 III.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제1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 제1절 계약실태 분석개요

#### 1. 조사목적 및 방법 등

##### (1) 조사 주관기관

- (사)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 (재)한국디자인진흥원

##### (2) 조사목적

설문조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인테리어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개인)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유형을 분석하여 인테리어디자인 용역계약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조사대상 : (사)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임원진 188명

##### (4) 조사방법과 한계

- ① 조사방법 : 전자우편 설문조사와 통신면접
- ② 회신률 : 표본 188명/회신 99명(회신률: 53%)
- ③ 한계

본 조사는 신뢰도, 오차범위 등의 설계를 통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설문조사가 아닌 (사)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므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한국 실내건축디자이너의 디자인 개발계약의 실태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조사기간 : 2013.8.26~2013.9.4



## 제2절 설문조사결과

### 1. 인테리어 디자이너 특성<sup>45)</sup>

○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중소기업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경영 또는 근무)

#### ① 매출<sup>46)</sup>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37%가 5억원 미만, 62%가 10억원 미만의 매출액 규모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매출액이 인테리어 시공(실내건축업) 매출액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sup>47)</sup>하면 매출액 규모로 추정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사업규모는 영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4-1> 인테리어 디자이너 매출액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	1~5	5~10	10~30	30~60	60~100	100~300	300이상	합계
수	11	36	14	12	15	7	3	1	99
비율(%)	11	37	14	12	15	7	3	1	100
비율누계	11	48	62	74	89	96	99	100	

#### ② 근무자수(본인 포함)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근무자수는 3명~5명이 34%, 2명 16%, 6명~10명 14%, 11명~15명 13% 등의 순이며, 전체의 57%가 5인 이하, 71%가 10인 이하, 84%가 1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자수 기준으로는 전체 응답자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표4-2> 인테리어 디자이너 근무자수

(단위: 근무자수)

구분	1	2	3~5	6~10	11~15	16~20	21~100	100이상	합계
수	7	16	33	14	13	8	7	1	99
비율(%)	7	16	34	14	13	8	7	1	100
비율누계	7	23	57	71	84	92	99	100	

45)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본 절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표기하며, 여기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디자인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

46)48) 응답자의 매출액 규모는 실내건축업의 공사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신화회계법인)

○ 디자인 개발 위탁자 유형

디자이너의 주된 개발의뢰자는 개인 36%, 중소기업 32%, 대기업 17%, 공공기관<sup>48)</sup> 11%, 기타 4% 순으로 기업고객(대기업과 중소기업 합계)의 비중이 49%로 가장 높다.

<표4-3> 디자인 개발 위탁자 유형(복수응답)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32	62	68	22	8	192
비율(%)	17	32	36	11	4	100

○ 설계비 산출기준

인테리어디자인 설계비 산출기준은 예상실제투입비용 기준 37%, 인테리어 공사금액 기준 30%, 인테리어디자인 설계면적 기준 25%, 기타 8%로 나타났다.

<표 4-4> 인테리어디자인 설계비 산출기준

구 분	투입비용	공사금액	설계면적	기타	합계
수	37	30	25	7	99
비율(%)	37	30	25	8	100

## 2. 디자인 개발계약에서의 권리침해 유형 등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계약서 작성 없이 디자인 개발을 수행하여 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75%로 조사되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3%, 개인 45%, 공공기관 7%, 기타 5%로 나타났다.

<표4-5> 계약서 미작성 피해의 개발위탁자(복수 응답)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7	43	63	9	7	139
비율(%)	12.2	30.9	45.3	6.5	5	100

4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을 말함. 이하 동일

○ 일방적 계약해지

응답자의 67%가 디자인 개발계약에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으며, 일방적 계약해지의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5%, 개인 45%, 공공기관 3%, 기타 7% 순이다.

<표4-6> 일방적 계약해지 피해의 개발위탁자(복수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4	39	53	4	8	118
비율(%)	11.9	33.1	44.9	3.4	6.8	100

○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응답자의 66%가 계약에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50%, 개인 42%, 공공기관 4%, 기타4% 순이다.

<표4-7>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미배상 개발위탁자(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9	39	49	5	4	116
비율(%)	16.4	33.6	42.2	4.3	3.4	100

○ 보수 체불

응답자의 66%가 개발 완료 후 보수 잔금의 체불 등의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0%, 개인 50%, 공공기관 7%, 기타3% 순이다.

<표4-8> 보수 체불 개발위탁자(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3	34	58	8	3	116
비율(%)	11.2	29.3	50.0	6.9	2.6	100

○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응답자의 84%가 계약 후 계약 내용에 없는 무리한 디자인 개발 또는 수정작업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50%, 개인 33%, 공공기관 13%, 기타 4% 순이다.



<표4-9> 계약 내용의 무리한 변경 개발위탁자(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29	51	53	20	7	160
비율(%)	18.1	31.9	33.1	12.5	4.4	100

○ 계약 내용 변경/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 불인정

설문 응답자의 76%가 무리한 수정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50%, 개인 35%, 공공기관 12%, 기타 3% 순이다.

<표4-10>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불인정 개발위탁자(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31	51	57	19	5	163
비율(%)	19.0	31.3	35.0	11.7	3.0	100

○ 지식재산권 침해로 사유로 위탁자의 손해배상 요구

설문 응답자의 19%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9%, 개인 32%, 공공기관 35%, 기타 4% 순이다.

<표4-1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개발위탁자 (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8	20	18	9	2	57
비율(%)	14.0	35.1	31.6	15.8	3.5	100

○ 디자인 결과물의 일방적 변경 출시

설문 응답자의 69%가 디자이너의 최종 디자인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시공한 경험이 있으며, 발주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4%, 개인 48%, 공공기관 4%, 기타 4%

<표4-12> 디자인 일방적 변경 시공 등의 개발위탁자 (복수 응답)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6	30	49	4	4	103
비율(%)	15.5	29.1	47.6	3.9	3.9	100

○ 디자인 도용

설문 응답자의 70%가 디자인을 타 업체에 도용된 경험이 있으며, 디자인 도용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6%, 개인 45%, 공공기관 4%, 기타 5% 순이다.

<표4-13> 디자인 도용자의 유형 (복수 응답)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합계
수	16	35	49	4	6	110
비율(%)	14.5	31.8	44.5	3.6	5.5	100

○ 기타

- 시공 조건의 설계비 미지급
- 기획설계만 받고 미계약, 기획설계안 도용
- 디자인 제출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 불인정
- 발주처의 사정(준공 불허가)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
- 설계비를 인테리어 시공비에 포함한다고 하고 인테리어 시공비를 최저가 입찰 진행하여 이중의 손해 발생
-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미기재로 인한 손해 발생
- 잔금 청구시점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 3. 설문조사 결과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99%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자수와 매출액 규모에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영세성은 디자인 개발계약에서 평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디자인 설계의 주고객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기타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계약 상대방(발주자)은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개인, 공공기관,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0.10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디자이너 권리보호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특성(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이용한 디자인 보수 불인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파악되었다.

## 제2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 1. 표준계약서 도출방법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거래실태 분석을 통한 쟁점(불공정 거래로 인한 권리침해)의 도출과 도출된 쟁점에 대한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표준계약서(2010. 12.17 개정. 이하 “KOSID계약서”라 한다)의 조문을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민법」과 「저작권」의 관련 법률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sup>49)</sup> 및 국외 표준계약서 사례<sup>50)</sup>를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 2. 표준계약서의 목적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3. 적용범위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인 의뢰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간의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를 말한다.

4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 국토해양부, 2009.11.23

5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방안 연구」 신화회계법인, 2013



## 제2절 표준계약서 도출

### 1.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계약 쟁점 및 개선안

#### (1)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손해

설문응답자의 67%가 발주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6%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민법은 손해배상을 요건으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제 권리를 규정<sup>51)</sup>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디자이너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디자이너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발주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디자이너가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의 이익에서 이미 지급한 비용을 가산하고 일을 중지함으로써 면하게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sup>52)</sup>

#### ① KOSID계약서

제12조: “ ‘갑’은 설계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의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 다만, ‘갑’ ‘을’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문제점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협회가 1997.4.16 제정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보수기준(이하 KOSID 보수기준)”에 의해 산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 규정 없음

51)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52) 김형배 「민법학개론」 신조사, 2001. 1111쪽 요약

-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 없음
-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을 사업자단체인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제정한 보수기준에 따를 것을 명문화하여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담합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sup>53)</sup>

### ③ 개선안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법률적 효과인 손해배상을 규정하였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의뢰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제17조(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2) 계약 내용의 변경

발주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최초 계약보다 용역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에 따른 일정의 연장,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 내용의 변경과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응답자가 76%로 나타났다.

계약 내용의 변경의 쟁점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변경된 계약의 이행가능성과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상 여부이다.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의 계약 내용의 변경 요청이 당초 제시한 설계 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공급자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변경이 이행가능하다면 변경으로 인한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 ① KOSID계약서

제6조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할 때는 ‘갑’은 ‘을’에게 보수기준(3조3항)에 의하여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5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4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② 문제점

- 상당한 변경의 요건 미비
- 상당한 변경으로 인한 추가보수의 산정기준을 KOSID 보수기준으로 규정
- 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 변경절차와 변경절차의 효력발생요건 규정 미비

## ③ 개선안

상당한 변경의 정의와 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 및 계약 내용의 변경 방법을 규정하였다. (제2조(정의), 제8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 (3) 지식재산권 침해

설문응답자의 69%가 최종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험이 있고, 70%가 기획단계 또는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발주자에게 제시한 디자인 설계안을 계약 해지 후 발주자가 협의 없이 사용당한 경험이 있다.

계약 이행에서 발주자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최종 결과물의 변경 실시
- 계약 해지 후 디자인 아이디어, 설계안의 사용(실시)

#### ① KOSID계약서

제10조: “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sup>54)</sup> ‘갑’은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재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 ‘갑’은 제1조의 보수금액을 완불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에 의한 도서를 행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② 문제점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작된 설계도서의 저작권 사용 조항 미비
-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발주자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조항 미비

5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8조(저작권 보호) “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③ 개선안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설계도서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제1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4) 검수

검수란 발주자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 결과물이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의 목적물로서 승인 및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고 보수청구권을 확정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다.

#### ① KOSID계약서

제9조: “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를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문제점

- 검수절차 조항 미비

#### ③ 개선안

계약의 이행 단계별 결과물과 최종결과물의 검수와 검수결과의 통보방법 및 검수 일정 등을 규정하였다. (제9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 (5) 제3자에 대한 손해

제3자에 대한 손해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최종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무형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제3자의 손해는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를 말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OSID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의 보증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 ” 등을 규정하였다.(제11조(제3자에 대한 손해))

## (6)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이란 최종 인도한 설계도서의 하자에 따른 책임과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말한다. 설계도서의 하자란 발주자의 주관적 선호를 의미하지 않고 설계도의 실시(시공)에 기술적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① KOSID계약서

제7조: “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 ② 문제점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규정 미비
- 손해배상액의 한도 규정 미비

### ③ 개선안

설계도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한도”를 규정하였다.(제19조(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

## (7) 보수

보수는 계약 이행의 대가로서의 보수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필수적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로 구성된다.

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할지급 방법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설계계약의 이행방법과 합치하고 발주자의 보수 체불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타당하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필수적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일반도면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도면, 용량계산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 내역서 등)의 제작경비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실내모형, 투시도 제작경비
- 3D실사 렌더링 제작비
- 출장여비
- 설계도서의 인쇄비
- 제3자 창작물 사용료
- 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그 시험수수료
-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경비
- 최종 설계도서의 납품 수량 이외의 추가 제작에 필요한 경비
- 발주자가 위탁한 업무수행 필요자료 제작비 등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 즉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비 변상적 경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생예상액 등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① KOSID계약서

제2조: “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기본설계완료시 50%를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 20%는 실시설계완료시 지불한다.”

제8조: “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6 (생략) “

### ② 문제점

- 보수의 지급비율 규정
- 실비 변상적 경비의 지급기한 명시하지 않음

### ③ 개선안

보수의 지급방법, 실비 변상적 비용의 지급기한 등을 규정하였다.(제5조(보수), 제6

## 조(보수의 지급))

### (8) 보수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

KOSID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계약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보수 지급 지연이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과 발주자의 보수지급의 강제수단으로 보수 지급기한의 경과한 경우의 지연이자를 규정하였다. (제7조(보수지급 지연이자))

### (9) 기타

#### ① 분쟁조정절차

KOSID표준계약서는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표준계약서는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화해 기구로 규정하였다.(제21조(분쟁의 해결))

#### ② 통지의 방법

KOSID표준계약서는 통지의 방법과 효력발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의 변경, 독촉 등의 통지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제22조(통지))

#### ③ 불가항력

계약의 이행에서 발주자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이행지체, 손해배상 등의 면책에 대한 불가항력을 규정하였다.(제20조(불가항력))

#### ④ 비밀유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의 비밀 누설금지과 위반의 효과를 규정하였다.(제13조(비밀의 유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2. 쟁점별 개정(안) 비교

인테리어디자인 개발계약의 쟁점별 KOSID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4-14> KOSID표준계약서 개정(안)

쟁점	KOSID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비고
보수	제1조(보수) 제8조(필요경비)	제5조(보수)	제1조와 제8조를 제5조(보수)로 통합하여 보수를 보수와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규정
	제2조(보수 지급방법)	제6조(보수의 지급방법)	지급비율 삭제
	-	제7조(보수지급지연이자)	지연이자 신설
계약기간	제3조(기간)	제3조(설계면적 및 기간)	계약기간 연장 사유 제20조 불가항력으로 통합
용역범위	제4조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용역범위 기재
발주자의 협력의무	제5조	제13조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자료 관리의무 및 반환 명시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제6조(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	제2조(정의) 제8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변경의 판단기준 명시,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수 지급기준 삭제,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추가 보수 지급의무 명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조(중지 또는 폐지)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의뢰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제17조(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와 방법 및 효력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 명시
하자담보 책임	제7조	제19조(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하자담보책임)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의 한도 명시
인도의무	제9조(인도의무)	제9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검수 규정에 계약 이행 목적물 인도의무와 수량 등 명시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쟁점	KOSID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비고
저작권	제10조(저작권) 제11조(저작권 실시요건)	제10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3자의 저작권, 용역 수행 과정 중 발주자에게 제시(인도)된 중간인도물에 대한 저작권과 중간인도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요건 명시
지체상금	제13조	제18조(지체상금)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시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14조	제12조	조목 변경
계약서 해석	제15조	제23조(상호합의)	계약조문의 해석기관 명시
계약서 목적	-	제1조	계약서 목적 신설
용어의 정의	-	제2조	계약서 해석에 필요한 용어 정의 신설
발주자의 검수의무	-	제9조	검사·인수, 검수기한, 검수 결과의 통지 등 신설
제3자에 대한 손해	-	제11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신설
비밀유지	-	제13조	계약 당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분쟁해결	-	제21조	분쟁 해결절차 신설
통지의 방법	-	제22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발생 요건 등 신설

## (별첨1)

#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이하 ‘공급자’ 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 디자인 개발” 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 디자인 개발” 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 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주얼리디자인’ 이라 함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소재의 가치와 관계없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일체의 장신구 디자인을 말한다.
3. ‘중간인도물’ 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4. ‘최종시안’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5. ‘최종인도물’ 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6.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7. ‘2차적저작물’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디자인보호법」의 ‘유사디자인등록’의 등록대상인 유사디자인을 포함한다.
8.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 라 함은 전 8호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9. ‘사전작업물’ 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3조(보수)

-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원정(₩                      )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Mock-up)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 제4조(보수의 지급)

-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 ② 실비 변상적 비용은 발생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보수지급 지연이자)

-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 추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에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②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요자에게 인수된 최종인도물의 변형·변경 및 최종인도물에 유사한 디자인의 창작 권리 등의 2차적저작물의 창작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익을 위하여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나, 수요자가 「디자인보호법」의 유사디자인 등록을 위한 유사디자인의 창작요청 등을 할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과 「디자인보호법」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도의 보수로 수요자에게 양도된다.

⑤ 수요자는 최종인도물의 지식재산권 보전을 위한 등록절차의 이행에서 공급자와 합의된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급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인도물이 구현된 제품의 설명서 등에 공급자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의 최종인도물의 공표가 있기 전에는 공표하지 아니하나, 수요자의 공표 후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 창작연표 등에 창작물을 표시할 수 있다.

###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수요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 한다.

③ 검수 후 최종인도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비밀 준수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시점부터 1년간 준수한다.

###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00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

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 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 제15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 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 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제16조(공급자의 배상책임)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제17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 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 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에 따른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9조(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20조(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21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별첨2)

##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설 계 명:  
위 치:  
용 도:  
설계면적:            m<sup>2</sup>

○○○ (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이하 ‘공급자’ 라 한다)는 “○○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계약서의 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위탁한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 라 함은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설계도서’ 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해 공급자가 제작한 기획설계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와 공사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요자에게 제시한 도서를 말한다.
3. ‘최종 설계도서’ 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실시설계단계의 이행을 통하여 제작되고 수요자에게 인도된 설계도서로서 실시설계도서를 말한다.
4. ‘일반도면’ 이라 함은 전기, 통신 및 설비(위생, 냉난방 및 주방설비 등), 소방부문 등에서 용량이나 기타 제반 계산서를 제외한 전기, 통신 및 설비, 소방 등의 일반 평면배치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제3자의 창작물’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 소유

의 지식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도화 등)을 의미한다.

7.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 이라 함은 설계변경된 부분의 합계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설계의 설계량(설계기간, 설계범위, 공사면적, 혹은 공사비 중 하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 이라 함은 공급자의 투입인력 시간당 실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를 말한다. 노임단가는 1개월 22일,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설계면적 및 기간)

① 설계면적:  $m^2$

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4조(공급자의 업무범위)

① 수요자가 위탁하여 수행하는 공급자의 업무범위는 별지제1호서식 “인테리어디자인 설계업무범위” 에 쌍방이 합의하여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 “별지제1호서식” 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자” 와 “공급자” 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 제5조(보수)

① 설계보수액은 일금 \_\_\_\_\_ 원정(₩ \_\_\_\_\_)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설계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실내모형, 투시도의 제작을 요할 경우 그 제작비
2. 3D실사 렌더링 제작비
3. 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4. 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 수수료
5.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경비
6. 출력물 등의 인쇄비
7. 제3자 창작물 사용료
8. 발주자가 위탁한 업무수행 필요자료 제작비
9. 일반도면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도면, 용량계산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 등)의 제작경비

- 10. 제9조제3항의 최종 설계도서 부수 이외의 추가 부수 요청 시 그 제작비용
- 11.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 제6조(보수의 지급)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_\_\_\_\_ 원정(₩ )
- 2. 중도금: 기본설계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_\_\_\_\_ 원정(₩ )
- 3. 잔금: 최종설계도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 변상적 비용은 발생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자 창작물 사용료는 제3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보수지급 지연이자)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 또는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할 때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보수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 제9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설계업무의 각 단계에서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최종설계도서 ( )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를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설계도서는 인수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는 본 설계도서를 설계대상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수 지불이 완료 된 후 본 계약에 의한 설계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인도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④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설계업무의 각 단계의 결과물은 별도의 합의된 보수를 완불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그 단계의 결과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실시설계도서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 제11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②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이 “00 디자인 설계” 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설계 진행에 필요한 자료
  2. 각종 관련 도면(건축, 설비, 전기, 조명 등)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설계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설계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 제17조(공급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 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공급자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2. 수요자가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제18조(지체상금)

-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설계” 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설계” 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제19조(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

- ① 공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 중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제20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제22조(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23조(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별지 제1호 서식)

## 인테리어디자인 설계업무범위

구 분	수행내용	결과물	여부
기획설계	가. 수요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 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 등 제 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 문제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서 관계 관청 또는 전문 기술자와의 협의 및 계획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 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		
기본설계	가. 설계구상의 이미지스케치 등의 작성		
	나. 평면도, 입면도, 천장 평면도, 일반 단면도의 작성		
	다. 설계 설명서의 작성		
	라. 공사비계산서 및 공정개요서의 작성		
실시설계	가.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의 작성		
	나. 상품, 전시품들의 배치, 공간구성, 연출에 따르는 도서의 작성		
	다. 가구, 집기구의 배치 및 선정		
	라. 전기, 통신 및 제 설비에 관한 일반도면*		
	마. 공사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의 작성		
	바. 공사비 예산서		
	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		

\* 일반도면이란 전기 및 설비부문에서 용량이나 기타 제반 계산서를 제외한 전기, 설비의 일반 평면배치를 말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